

『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
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
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8월 20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가.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있어 국가에 헌신·공헌
한 참전유공자에게 연령 제한 규정으로 불공평한 예우 및
지원을 하는 것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
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
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고

나.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 중 “65세 이상”의 연령제한규정을 삭제하고, ‘1년이상 계속 거주’를 ‘3개월 이상 계속 거주’로 수정함(안 제3조)
- 나. 그 밖에 모순된 표기와 불필요한 용어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(안 제5조와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9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2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insuk333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”를 “참전유공자”로, “1년 이상”을 “3개월 이상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부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.

③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지원대상) 예우 및 지원대상은 <u>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</u> 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 신고를 하고, 계속 <u>1년 이상</u>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.	제3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<u>참전유공자</u> ----- ----- <u>3개월 이상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5조(참전명예수당 등) ① (생략) ② <u>수당 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하고 시비로 5만원을 보조하며,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</u> ③ <u>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시비로 20만원을 보조하며,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.</u>	제5조(참전명예수당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.</u> ③ <u>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.</u>
제10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0조 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에</u> ----- -----

[별첨 2]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관련조문 안 제3조
- 수당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서 전체 참전유공자로 확대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비용추계자료는 인천보훈지청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어, 현 지급 인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
- 사망자는 현 추세를 반영하여 연400명으로 예상

나. 추계 결과

- 향후 5년간 1,001,400천원의 추가예산 소요 예상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명 / 천원)

구 분	2014	2015	2016	2017	2018	합계
신규대상자 65세미만	1,113	412	108	32	4	
예산추가액	667,800	247,200	64,800	19,200	2,400	1,001,400

* 재원 : 전액시비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- 제6조(참전명예수당) ☐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- 제2조(지급신청) - 제3조(지급방법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】

제6조(참전명예수당)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수당지급대상자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7호·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,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.

② 삭제

③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다만,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.

④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⑤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, 제19조 본문,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·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⑥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·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2.1.26]

【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】

제2조(지급신청) ① 「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(이하 “명예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군수·구청장은 제반서류를 매월 15일까지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(지급방법) ① 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제반서류를 확인하여 매월 25일(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)에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
②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